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164-11

www.mafra.go.kr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표

2018. 2. 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 일반 ·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1
2. 포장재 보관료	3
3. 헨포장재 관리비	4
4. 양 곡 가 공 임	5
5. 포 장 임	7
6. 양곡가공보험료	8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	8
8. 일 반 하 역 료	9
9. 톤 백 요 율	13
10. 항 만 하 역 료	14
11. 철 도 임	17
12. 트 럭 운 임	18
13. 해 송 운 임	22

1. 일반·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가. 일반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특지				감지				을지				야적	보관 보험료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특급	1급			2급	3급	등외
쌀 현미	229.6	215.3	181.3	161.0	141.3	203.0	190.9	163.3	142.3	124.6	184.8	173.4	148.1	129.3	112.7	90.4	1.26
벼	177.8	166.5	143.3	124.4	108.8	157.2	147.6	126.5	109.5	96.0	142.9	134.1	115.2	99.9	87.6	69.7	0.98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83.1	172.6	147.6	128.2	113.0	162.0	152.4	130.4	113.8	99.4	147.6	138.1	118.4	103.3	90.3	72.2	0.98
겉보리 쌀보리 밀	133.1	125.1	107.0	93.3	81.7	117.9	110.4	94.6	82.0	71.9	107.3	100.2	85.8	74.8	65.2	51.9	0.66

나. 저온창고 양곡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단위 : 원/1일 톤당)

	특 지	갑 지	을 지	보 관 보험료
쌀, 현 미	270.6	240.0	218.1	1.26
벼	209.4	185.7	168.6	0.98
보리쌀, 눌린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217.0	191.5	173.8	0.98
겉보리, 쌀보리, 밀	157.2	138.8	125.9	0.6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양곡보관료 및 보험료는 1일 톤당 요금이며, 보관일수의 계산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다.
-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에 5.0%, 톤백으로 보관된 양곡은 3%를 각각 가산 적용한다.
 - 광역시 지역의 가산 대상에서 '95. 3. 1일 이후부터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제외한다.
 - 이 경우 단위당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절사한다.
- (3) 중량계산은 실 양곡 중량으로 하되, kg까지로 한다.
- (4) 양곡 보관보험료는 지역과 등급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정부소유 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에도 양곡 보관보험료를 지급한다.
- (5)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특 지 : 특별시 및 광역시
 - 갑 지 : ① 시 지역, ② 주요 항구도시 : 장항
 - 을 지 : 상기 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
- (6)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7)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포장재 보관료

(단위 : 원/속)

구 분	단위(속/束)	보 관 료	
		가공공장	야 적
P.P 대	200매	14.5	7.1
지 대	200	8.0	4.1
P.E 대(10kg들이)	700	9.6	4.9
P.E 대(4kg들이)	1,000	5.8	2.8
헌 P.P 대	200	7.4	4.1
톤백 P.P 대	20	22.0	10.8
헌 톤백 P.P 대	10	11.5	6.3

부 대 조 건

- (1)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보관하는 포장재 보관료는 입고 다음날부터 사용을 위해 출고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이외사항 보관료에 대하여는 양곡가공도급계약서 제13조에 규정한 포장재 보관료를 적용한다.
- (2) 이 요금은 1일당 요금이다.
- (3) 포장재중 불용품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헌포장재 관리비

(단위 : 원/매)

구 분	단 위	관 리 비
헌 P·P 대	1매	16.2
헌 톤백 P·P 대	1매	96.4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관리비는 정부관리양곡 헌 포장재 관리요령에 따라 품위별로 선별 분류 보관한 헌 포장재에 적용하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 지급하는 비용이다.(품위선별 보관을 하지 아니한 헌 포장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관리비는 포장재의 등급이나 가용, 불용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3)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양곡가공임

(단위 : 원/제품 톤당)

가공구분	제품곡종	원료곡종	가공임		
			A등급	B등급	C등급
정상가공	쌀	벼	95,671	91,350	86,424
	쌀	현미	84,856	81,024	76,654
	현미	벼	52,309	49,946	47,253
	보리쌀	겉보리	193,539	184,798	174,832
	눌린보리쌀	겉보리	215,687	205,944	194,838
수분조절도정	보리쌀	쌀보리	143,660	137,171	129,775
	눌린보리쌀	쌀보리	183,500	175,211	165,763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가공임은 포장방법과 관계없이 지불하며, 원료의 하차료 및 입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이 표의 수분 조절도정 가공임은 쌀보리를 원료로 하여 수분조절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이 표의 가공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상여금,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5)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가공분 부터 적용한다.

5. 포장임

(단위 : 원/제품 톤당)

포장	규격	포장임
P·P 대	40kg 들이	5,654
P·P 대	20kg 들이	15,325
지 대(봉합식)	20kg 들이	15,090
지 대(봉합식)	10kg 들이	16,599
P·E 대	10kg 들이	16,296
P·E 대(외포장 포함)	4kg×5개 들이	32,109
P·P 대	5kg 들이	19,361
P·P 대(톤백)	5kg×180개 들이	25,729
P·P 대(톤백)	1,000kg 들이	6,716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포장임은 포장 내용물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제품의 상차료 및 출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이 표의 포장임에는 포장용지의 하차 및 입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표의 포장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 퇴직금 및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포장분 부터 적용한다.

6. 양곡가공보험료

(단위 : 원/제품 톤당)

제 품	원 료	보 험 료
쌀	벼	521
쌀	현 미	584
현 미	벼	504
보리쌀, 눌린보리쌀	겉보리, 쌀보리	309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보험료는 원료의 입고후 제품출고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가공중지와 제품의 인수기일 경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관보험료를 적용한다.
- (2) 이 표의 보험료에는 정부양곡가공화재공제특약협정서 제1조 1호(공제 목적물의 범위)에 규정된 일체의 물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3)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가공분 부터 적용한다.

7. 정부관리양곡 가공비용의 계산방법

- 양곡관리관이 가공을 요청한 양곡에 대한 가공비용의 계산은 가공임, 포장임, 원료의 하차·입고료 및 제품의 출고·상차료를 각각 실 양곡 중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실 양곡중량을 kg단위까지 계산한다.

8. 일반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1. 철 도 발 송 료	5,736
2. 철 도 도 착 료	5,858
3. 상 차 료	3,365
4. 하 차 료	3,052
5. 입 고 료	4,113
6. 출 고 료	4,113
7. 매 입 장 소 입 고 료	14,815
8. 매 입 직 송 상 차 료	9,775
9. 매입장소경비료(당일입고)	265
10. 선 별 료	3,052
11. 이 적 료	3,052
12.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3,052
- 50m초과 20m마다	1,500
13. 검 근 료	3,052
14. 복 포 훈 증 소 독 비	854
15. 양곡중량 시험작업비	5,470
16. 호 송 료	3,181

2) 포장재

(단위 : 원/속)

항 목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 철도발송료	185.2	104.5	238.3	134.5	171.3	117.2	164.9
2. 철도도착료	189.4	106.9	243.1	137.2	175.0	119.5	168.5
3. 상 차 료	108.1	61.1	139.1	78.6	100.0	68.4	96.1
4. 하 차 료	98.4	55.2	126.2	70.7	91.0	62.1	87.7
5. 입 고 료	132.2	74.5	170.1	95.8	122.3	83.6	117.7
6. 출 고 료	132.2	74.5	170.1	95.8	122.3	83.6	117.7
7. 이 적 료	98.4	55.2	126.2	70.7	91.0	62.1	87.7
8. 이 송 료							
- 20m초과 50m까지	98.4	55.2	126.2	70.7	91.0	62.1	87.7
- 50m초과 매 20m마다	48.2	27.1	62.1	35.0	44.7	30.6	42.9
9. 검 수 료	98.4	55.2	126.2	70.7	91.0	62.1	87.7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노무자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3)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위(속)를 기준으로 한다.
- (4) 철도 수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다만, 철도발송시 호송인을 붙일 경우에는 별도로 이 표의 호송료를 적용한다.
- (5) 매입장소 입고료는 매입장소의 보관창고로 입고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매입장소와 매입양곡을 보관한 창고가 200m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일반하역료를 적용한다.
- (6) 매입장소 입고료는 50m이내의 이송료가 포함되어 있다.
- (7) 매입장소 경비료는 매입장소와 보관창고의 거리에 관계없이 매입당일 입고시키는 양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당일 매입물량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8) 매입 직송상차료는 순회매입 또는 매입장소의 창고여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입물량을 타 지역 창고로 직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9) 선별료와 이적료는 중복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 (10) 이송료는 20m 초과 200m까지 이송 작업할 때 적용하며, 20m 이내의 이송료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송거리 이내라도 양곡관리관(분임양곡관리관 포함)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운반구를 사용 할 수 있다.
- (11) 양곡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12) 양곡 훈증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관급으로 한다.
- (13) 개포장 작업도중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실제 일수에 해당하는 보관료를 지급한다.
- (14)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15)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9. 톤백요율

(단위 : 원/톤)

항 목	요 율
1. 톤백 매입료	5,717
2. 톤백 매입장소 입고료	5,558
3. 톤백 <u>매입</u> 직송상차료	5,094
4. 톤백 상차료	2,218
5. 톤백 하차료	2,218
6. 톤백 입고료	3,847
7. 톤백 출고료	3,847
8. <u>톤백 이송료</u>	
- <u>20m초과 50m까지</u>	2,528
- <u>50m초과 매 20m마다</u>	1,243

부 대 조 건

- (1) 부대조건은 『8. 일반하역료 1)양곡』 을 적용하되, 톤백과 관련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0. 항만하역료

1) 양 곡

(단위 : 원/톤)

구 분	항 목	요 율
일 반 항	적 선 료	9,933
	양 육 료	9,519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 선 료	10,211
	양 육 료	9,774
인천항	적 선 료	10,211
	양 육 료	9,774
평택, 당진항	적 선 료	10,211
	양 육 료	9,774
부산항 및 제주 전항	적 선 료	8,506
	양 육 료	7,836
공 통	경 비 료	244

2) 포 장 재

(단위 : 원/속)

항 목		P. P대 40kg들이	P. P대 20kg들이	지 대 20kg들이	지 대 10kg들이	P. E대 10kg들이	P. E대 4kg들이	P. P대 톤백들이
일 반 항	적선료	1,010	386	672	257	235	197	1,726
	양육료	965	368	645	246	229	191	1,650
보령, 장항, 군산, 대산, 목포항	적선료	1,039	396	690	263	245	204	1,775
	양육료	990	380	661	254	233	194	1,694
인 천 항	적선료	1,039	396	690	263	245	204	1,775
	양육료	990	380	661	254	233	194	1,694
평택, 당진항	적선료	1,039	396	690	263	245	204	1,775
	양육료	990	380	661	254	233	194	1,694
부산항 및 제주전항	적선료	862	330	576	221	204	170	1,474
	양육료	795	304	531	203	189	157	1,359
공 통	경비료	25.1	9.4	16.6	6.3	5.8	5.0	42.5

부 대 조 건

- (1) 이 표의 요율에는 일기불순,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할증과 선적할증 및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
- (2) 인천항의 경우 부잔교 이송 작업시에는 톤당 1,460원을 가산 적용하되,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작업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며,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5) 적선 양육시의 처리는 일관작업으로 한다.
- (6) 각 단계별 작업 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 (7) 경비료는 양곡 또는 포장재를 적선, 양육과 관련하여 경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 1기(15일)당 적용하며, 양곡 또는 포장재를 직반출입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양곡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파손포대 개포장시 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검사 확인에 의하여 별도 실비 정산한다.(다만, 파손포대 개포장은 작업량의 0.3% 범위 내에서 인정)

(9) 일반항 요율 적용시 다음지역의 경우는 다음의 할증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 경북 울릉군, 전북 부안군 위도면, 군산시 오식도동, 전남 여수시 남면·화정면·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군외면 제외) 지역 내의 적선 양육분 : 100%
- 전남 신안군 적선 양육분 : 150%

(10)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1)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1. 철도임

-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을 지불한다. 다만, 호송료는 별도 책정한 일반하역료에 의하여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 통지서의 표시액에서 제외한다.

12. 트럭운임

1) 국내양곡

(단위 : 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6,610	6,570
20km "	8,570	8,510
30km "	10,420	10,370
40km "	12,220	12,160
50km "	13,540	13,470
60km "	14,430	14,360
70km "	15,400	15,330
80km "	16,330	16,240
90km "	17,200	17,130
100km "	17,800	17,700
120km "	18,050	17,970
140km "	19,200	19,090
160km "	20,200	20,100
180km "	21,120	21,020
200km "	22,770	22,670
230km "	23,050	22,940
260km "	24,160	24,060
290km "	26,370	26,250
320km "	26,560	26,420
350km "	28,710	28,550
380km "	29,740	29,600
410km "	31,910	31,750
460km "	34,240	34,070
510km "	36,330	36,160
510km초과 매 50km마다	2,120	2,110

2) 수입양곡

(단위 : 원/톤)

거리대별	포 장 물	산 물
10km 까지	7,060	7,020
20km "	8,890	8,850
30km "	10,620	10,570
40km "	12,300	12,240
50km "	13,730	13,660
60km "	14,570	14,490
70km "	15,500	15,420
80km "	16,390	16,290
90km "	17,220	17,140
100km "	17,760	17,660
120km "	18,190	18,100
140km "	19,320	19,230
160km "	20,510	20,410
180km "	21,520	21,410
200km "	23,180	23,060
230km "	23,370	23,260
260km "	24,450	24,330
290km "	26,580	26,430
320km "	26,740	26,600
350km "	28,800	28,660
380km "	29,830	29,680
410km "	31,900	31,740
460km "	33,960	33,790
510km "	36,020	35,830
510km초과 매 50km마다	1,940	1,930

3)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대별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0km 까지	292	163	373	209	268	184	259
20km "	376	212	484	272	348	238	335
30km "	459	258	588	330	424	290	409
40km "	536	303	691	390	497	340	478
50km "	595	337	766	433	551	375	529
60km "	635	359	817	462	586	402	565
70km "	677	381	871	490	626	428	603
80km "	718	405	923	520	665	455	639
90km "	757	426	972	547	701	479	673
100km "	783	441	1,007	567	724	495	697
120km "	793	448	1,021	577	734	502	707
140km "	845	477	1,085	612	781	532	752
160km "	887	501	1,141	644	821	561	790
180km "	928	523	1,194	674	859	586	826
200km "	1,002	565	1,288	726	926	634	891
230km "	1,014	572	1,303	735	938	641	902
260km "	1,063	600	1,367	772	982	672	945
290km "	1,159	655	1,492	843	1,073	733	1,032
320km "	1,169	660	1,502	848	1,080	738	1,040
350km "	1,261	712	1,622	916	1,168	797	1,124
380km "	1,307	737	1,681	948	1,210	827	1,164
410km "	1,403	791	1,805	1,017	1,297	887	1,249
460km "	1,505	850	1,936	1,093	1,393	951	1,339
510km "	1,597	900	2,054	1,158	1,477	1,011	1,421
510km 초과 매 50km마다	94	53	121	67	86	59	83

부 대 조 건

- (1) 수입양곡 운송임은 입항지에서 최초 보관창고까지만 수입양곡 운송요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운송임은 국내양곡 운송요율을 적용한다.
- (2) 동일 거리 내에서는 동일 운임을 적용한다.
- (3) 유료도로 통행료 및 도선료는 실비를 지급하되, 왕복시 편도에 타 화물을 수송할 경우에는 편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수송거리는 km까지 계산하되, 1km미만은 4사 5입한다. 다만, 전 수송거리가 1km미만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 (5) 양곡의 중량계산은 실 양곡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다만 총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2톤으로 계산한다.
- (6) 우마차에 의한 양곡수송 운임은 본 운임에 준하되, 중량은 실 적재량을 기준하며, 이 부대조건 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처리한 분은 2.5%를 가산 지급한다.
- (9)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

13. 해상 운임

1) 양 곡

(단위 : 원, 3급품 톤/마일당)

거 리	요 율
1~20 마일	148.91
21~50	71.58
51~100	14.48
101~200	12.91
201~400	11.82
401 이상	8.61

2) 포장재

(단위 : 원/속)

거리	P.P대 40kg들이	P.P대 20kg들이	지대 20kg들이	지대 10kg들이	P.E대 10kg들이	P.E대 4kg들이	P.P대 톤백들이
1~20 마일	18.22	6.96	12.16	4.64	4.28	3.57	31.15
21~50	8.76	3.34	5.83	2.22	2.06	1.71	14.98
51~100	1.76	0.67	1.18	0.45	0.41	0.34	3.02
101~200	1.57	0.60	1.04	0.40	0.37	0.30	2.69
201~400	1.45	0.55	0.96	0.36	0.33	0.28	2.47
401이상	1.04	0.40	0.69	0.26	0.24	0.20	1.79

부 대 조 건

- (1) 양곡의 운임 계산방법은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내항 화물선 운임 규정”에 의하되 화물 등급상의 인수(因數)와 화물톤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화물 등급은 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등급표(백미, 외미, 소맥 등은 52, 소맥분은 57, 대맥, 조미는 65, 두류는 84 등)에 의하되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곡종의 화물인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현미·정맥·조·수수 52, 압맥(압소맥)·밀쌀 65, 옥수수 84, 혼합곡 55
- 나) 화물 톤수의 계산방법은 동 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정미중량에 포장재료 중량을 가산 적용하되 포장재료 중량은 40kg들이 P.P대는 0.14kg, 20kg들이 P.P대는 0.08kg, 20kg들이 지대는 0.18kg, 톤백들이 P.P대는 2.5kg으로 한다.
- (2) 운항구간이 20마일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20마일을 최저운임으로 한다.
- (3) 양곡의 적재중량은 kg까지로 한다.
- (4) 포장재 운임에는 화물등급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 (5) 포장재는 중량에 의한 1속당 요율이며, 1속 미만의 단수는 1속으로 계산한다. 속당 매수는 『2. 포장재보관료』 항목의 단량을 기준으로 한다.
- (6) 해양수산부 고시(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에 의한 화물입항료의 기본료는 동 고시에 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 (7) 해송운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의 해송분은 200%, 경상북도 울릉군 해송분은 5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및 전라남도 신안군 해송분은 150%,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화정면·돌산면, 고흥군 봉래면, 완도군(군외면 제외), 진도군 조도면 지역의 해송분은 100%,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해송분은 200%,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은 100%, 사랑면은 50%의 도서할증을 각각 작용하고 기타 지역은 동 규정 제7조에 의한다.
- (8) 이 표의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9) 이 요율은 2018년 2월 1일 조작 지시분 부터 적용한다.